

IP담보회수지원기구 보유IP 인수기업 지원프로그램

□ 사업화지원프로그램

- 회수지원기구 보유IP를 이전받은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지원
 - 지원규모: 거래대금의 30%이내 / 지원대상: 회수지원기구 보유IP 인수(예정)기업
 - 단, 5백만원(VAT별도) 이상의 거래건에 한하며, 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

< 사업화 지원프로그램 지원내용 >

지원프로그램	세부 지원내용
기술지도 및 컨설팅	·(추진내용) 매입IP의 사업화에 따른 기술지도·자문, 기술적 문제분석·해결 등을 위한 기술전문가 활용 지원 ·(지원사항) 지원범위내 전문가 활용비용 지원
IP경영컨설팅	·(추진내용) 매입IP 및 해당 기업의 지식재산 진단을 통한 이슈파악 및 해결전략 제시·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·(지원사항) 지원범위내 전문가 활용비용 지원
시제품 제작	·(추진내용) 매입IP를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을 위한 목업, 금형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·(지원사항) 지원범위내 제작비용 지원

□ 자금지원 추천프로그램

- IP담보회수지원기구의 매입IP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용 IP이전 및 IP사업화 보증 프로그램 출시·운영

< 인수 및 사업화 보증 추천 프로그램 절차 >

한국발명진흥회(회수지원기구)	신용보증기금
① 매입IP 수요기업 추천	→ ② 소관 영업본부 연결 및 사전검토 요청
	③ (영업점) 수요기업과 보증상담 진행 ★ 인수·사업화 보증 연계지원 사전 검토
⑤ 매입IP 이전 거래 실시	← ④ (영업점) IP이전보증 지원
⑦ 사업화지원프로그램 연계	↔ ⑥ (영업점) IP사업화 보증 지원

< 신용보증기금 보증상품내역 >

구분	IP-이전 보증	IP-사업화 보증
대상기업 및 과제	▪ 지식재산을 이전 받고자 하는 기업 - 특히, 실용신안, 디자인권 단독 이전 (양도/전용실시권)	▪ 최초 매출 발생 3년 이내 과제&최근 1년 관련 매출액 5억원↓ - 자체/정부R&D 성공 과제, 산업재산권 등
보증한도	최대 3억원	최대10억원